일본 여행자통관정보(1/2)

2014년 11월 현재

구분		통관기준	비고
면세통관범위	술	○ 3병	○1병 760ml 정도의 것 ○다만, 미성년자는 면세 안됨
	담배	○ 궐련 200개비 ○ 엽궐련 50개비 ○ 기타 담배 250g	○외국 거주자가 수입하는 경우 면세범위 2배로 증가 ○다만, 미성년자는 면세 안됨
	향수	○ 2온스	○1온스는 약 28ml(오데콜롱, 오데뚜왈렛은 면세안됨)
	기타 품목	○ 해외 시가 합계 20만엔까지 면세 ○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 ○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장남감 등 명백히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	○여러 품목 합계가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엔 이내 물품이 면세되고 그 나머지 물품은 과세 ○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더라도 1품목당 1만엔 이하인 물품은 면세(예 : 1개 1천엔짜리 초코렛 9개, 1개 5천엔짜리 넥타이 2개) ○1품목에 20만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액에 대해 과세(예 : 25만엔 짜리 가방은 25만원에 대하여 과세)
지급수단 등 신고		○ 100만엔 상당액 초과 현금 또는 유가증권 또는 금 1kg 이상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	○100만엔 상당액 초과 일본통화, 외국통화, 수표, 약속어음, 유가증권 등 신고의무 ○순도 90% 이상, 중량 1kg을 초과 금 신고의무

※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일본세관 홈페이지 참조 : www.customs.go.jp/kaigairyoko/index.htm

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	○ 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방후생국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, 아래 범위 내의 것은 세관의 확인만으로 수입 가능 - 독약·극약·처방약 : 용법·용량을 고려하여 1개월분 이내 - 독약·극약·처방약 외의 외용제 : 표준 사이즈로 1품목 24개 이내 - 그 외 의약품·의약부외품 : 용법·용량을 고려하여 2개월분 이내 - 화장품 : 표준사이즈로 1품목 24개 이내 - 의료기기 : 가정용 의료기기 1세트, 1회용 콘택트렌즈 2개월분 이내 ○ 다만,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의사 처방 등의 확인이 되지 않는 한, 개인에 의한 수입은 금지	※ 상세사항은 일본 각 지방후생국 홈페이지 참조 (http://kouseikyoku.mhlw.go.jp)
식품 식기	○ 판매용 또는 영업용 식품류·식기류·유아용 장남감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소에 신고하여야 함. 그러나 개인용 또는 시험연구용은 검역소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의 확인만으로 수입 가능 - 개인용 또는 시험연구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수량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행기간 및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최소한 휴대가 바람직	※ 상세사항은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조 (www.mhlw.go.jp/topics/yunyu/tp0130-1a.html)

수입금지 품 목	○ 아래 물품은 각 해당법령에서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로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- 아편·코카인 등 마약류, 각성제, 향정신약 - 총포류 및 그 부분품·총포탄·폭발물·화약류 - 화학병기의 재료가 되는 물질 - 병원체 - 통화·인지·우표·유가증권·카드의 위변조품 - 아동포르노·음란잡지 등 풍속 저해 물품 - 특허권·실용신안권·의장권·상표권·저작권·저작인접권·회로배치이용권·육성자권 침해물품 - 타사물품 모방품, 허위표시 물품 등	
기 타 유의사항	○ 식물(과일, 꽃, 야채, 쌀 등 포함)·동물(생고기, 건조고기, 햄, 소세지 등 포함)은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동식물 검역카운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※ 상세사항은 일본 농림수산성 검역소 홈페이지 참조 식물 www.maff.go.jp/pps/ 동물 www.maff.go.jp/asp/	
	○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은 사전에 경제산업성대신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승인하지 않음 - 살아 있는 동식물 뿐만 아니라, 이들의 모피·피혁제품 및 한방약도 포함 ※ 상세사항은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참조 www.meti.go.jp/policy/external_economy/trade_control/boekikanri/cites/index.html	
	○ 엽총 또는 도검을 일본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수입 승인 및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소지 허가가 필요함	

일본 여행자통관정보(2/2)

(1)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 적용 범위

○ **신변용품 및 직업용구** : 사용중인 의류, 화장품, 기타 이러한 류로 신변용품 및 직업상 필요한 휴대용기구로 여행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됨.

○ **기타 물품** : 신변용품 및 직업용구 이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범위내에서 면세됨.

품명	면세한도	비고
주류	3병	1병 760ml
담배	궐련 200개비	· 공항면세점 등 외국에서 구입한 일본제 담배는 외국제 담배와 별도로 좌측의 수량까지 면세됨. · 외국거주자가 수입하는 담배는 외국제·일본제 각각 면세수량이 2배가 됨.
	엽궐련 50개비	
	기타담배 250g	
향수	2온스	
기타 물품	20만엔	· 1품목당 합계금액이 1만엔 이하인 물품은 전량 면세(면세한도 20만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) ·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그 나머지 물품에 과세 · 1개에 20만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공제없이 전체금액에 대해 과세됨.

* 쌀은 연간 100kg 범위 내에서 면세가 적용되며 지방농정사무소에 제출한 "미곡의 수입에 관한 신고서(세관제출용)"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.
*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장난감 등 명백히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됨.
* 20세미만인 경우 주류와 담배 면세가 적용 안됨.
* 과세가격이 30만엔을 초과하면 일반 무역화물과 똑같은 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.

(2) 휴대품 통관 규제

수입금지	마약류·향정신성의약품, 총기류, 병원체, 위조지폐, 음란물, 지재권침해물품 등
수입규제	ㅇ 동물·육제품(소시지, 햄, 말린고기 포함), 식물(채소, 과일, 쌀 등 포함): 세관검사 전에 동식물 검역카운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. ㅇ 의약품, 화장품 등 수량 제한 - 내복약 : 기본적으로 2월분(의사처방 의약품 등은 1월분) - 외용약 : 1품목 24개 이내 - 화장품 : 1품목 24개 이내 ㅇ 엽총, 공기총 및 도검류(칼날 길이 15㎝ 이상) ㅇ 워싱턴조약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(악어, 뱀, 땅거북, 상아, 사향, 선인장 등)
지급수단 등 세관신고	· 100만엔 상당액 초과 현금 또는 유가증권 · 금(순도 90%이상) 1kg 이상

(3)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에 대한 세율의 적용

① “**간이세율**”이 적용되는 물품

품명		세율
주류	위스키, 브랜디	600엔/ℓ
	럼주, 진, 보드카	400엔/ℓ
	리큐어, 소주 등	300엔/ℓ
	기타(와인, 맥주 등)	200엔/ℓ
궐련담배		1개비당 11.5엔
기타물품(아래의 ②일반세율 적용 품목 제외)		15%

② “**일반세율**”이 적용되는 물품
- 관세율이 무세인 품목(주류 중 관세율이 무세인 것은 제외)
- 1개의 과세가격이 10만엔을 초과하는 것
- 쌀(납부금을 납부해야 함)
- 식용김과 파인애플 제품, 궐련 담배 이외의 담배, 엽총